

# 대법원 2023도1497 살인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국토연구원 부원장인 피고인이 그 숙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같은 기관 소속 여직원이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는데도 119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7시간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함(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1497 판결)

## 1. 사안의 개요

###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국토연구원 부원장, 피해자는 같은 기관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에 있었음
- 피고인은 2019. 8. 16. 22:06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세종특별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였는데, 23:00경 피해자가 뇌출혈로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
-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였고,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리고 가는 등 구호조치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할 수 있었음
-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음날 06:00경까지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하고 의식이 없는 피

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를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 레그룸 부분에 방치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구호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함

## 2. 소송경과

▣ 제1심 : 무죄

▣ 원심 : 파기, **유죄(징역 8년)**

### ● 원심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피고인은 119 신고 등 구호조치할 작위의무가 있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과 특별한 개인적 신뢰관계에 있었고, 밤늦은 시간 피고인의 숙소에서 오직 둘만 있던 중 의식을 잃은 건강이상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를 인지한 피고인에게는 신의칙,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따라 위와 같은 의무가 발생함
- **피고인의 부작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 피고인이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이행했더라면 피해자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구호조치 의무 불이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 **살인의 고의가 인정됨** :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 등이 드러나 피고인의 명예나 사회적 지위 등이 실추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두었으므로, 미필적인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

### ● 피고인이 상고함

## 3. 대법원의 판단

### 가.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작위의무 인정)

여부)

- ▣ 피고인의 부작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판결 결과

- ▣ **상고 기각**(원심 수긍)

## 다. 판단 내용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관한 증거법칙을 위반하거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과관계,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 고의,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